

의안번호	제 262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2월 일 (제 305 회)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장선배 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12월 7일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장선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12월 7일
발 의 자 : 장선배, 심기보, 김도경,
김광수, 노광기, 손문규,
강현삼

1. 개정이유

- 열린감사 실현과 도와 시·군정의 감사기능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능력 제고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공정성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 등(안 제3조)
 - 도민감사관의 시장·군수 추천내용 삭제
 - 도민감사관 자격에 해당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
-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관련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척 및 회피(안 제5조의2)
-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범위 확대 (안 제7조)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예산수반(비용추계서) : 해당 없음
- 집행기관 협의여부 : 여
- 입법예고 여부 : 여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도민감사관은 15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위촉한다.

1.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
2. 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·기술사·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
3.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제척 및 기피)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할 수 있다.

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, 스스로 회피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3조(구성) ① 도민감사관은 15명이상 30명 이하의 명예직으로 한다.</p> <p>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북도민중에서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·기술사·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3.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	<p>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도민감사관은 15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한다.</p> <p>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해당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. 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·기술사·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.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
<p>< 신설 ></p>	<p>제5조의2(제척 및 기피)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, 스스로 회피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수당)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수당 등)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자료 제출 요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출석·답변의 요구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)
 2. 관계 서류·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
 3.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
 4. 금고·창고·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21조(실지감사)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.

제22조(일상감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·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·보건·환경·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 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.

제29조(비밀유지 의무)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